

제 10 장 투 자

제 1 절 정 의

제 10.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분쟁투자자란 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3절에 따라 청구를 제기 당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인기업·합작투자 또는 그 밖의 조합 및 기업의 지점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 소유하거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통화 및 그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개정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가.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한다.

1) 기업¹⁾

- 2) 기업의 주식·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지분 참여
- 3) 채권·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기업의 채무증서
- 4) 완성품 인도·건설·경영·생산·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 5) 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 6) 지적재산권
- 7) 국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 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 8)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가호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투자된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어야 하고 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나. 다음은 투자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 1)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권
 - 가) 당사국 영역 내의 국민이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내의 기업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 나)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또는
- 2) 가호1)목에서 8)목까지 규정된 이익의 종류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금전적 청구권

수익은 어떠한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금·사용료·수수료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투자에서 산출되거나 파생된 금전적 수익을 말한다.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란 그러한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양 당사국은 투자유치국 영역 내 기업이 이 협정상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 영업장소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함을 양해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 및 당사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사를 말한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제 2 절 투자

제 10.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제10.16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당시의 기준의 투자 및 발효일 이후 이루어지거나 획득되는 투자에 적용한다.
3. 이 장의 조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4. 이 장과 다른 장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를 기탁하도록 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건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이 그 국경 간 서비스의 조항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은 기탁된 채권이나 재정적 담보에 대한 당사국의 대

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이 장은 제10.5조 및 제10.21조를 제외하고,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배타적으로 자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수령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장은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이 장은 어떠한 조세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0.4 조 대우의 최소기준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

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부여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제1항의 의무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형사적·민사적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 10.5 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떠한 요건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어떠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산부품 사용을 달성하는 것
- 다. 자국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 내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키는 것
- 마.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투자자의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자국 영역에서 제한하는 것
- 바. 자국 영역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어떠한 실체에게 기술·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지식을 이전하는 것, 다만, 다음을 제외한다.
 - 1) 경쟁법 위반혐의의 시정을 위하여 법원·행정법원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집행되는 요건, 또는

2) 지적재산권의 이전에 관계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요건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당사국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2. 제1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된 이익의 수령의 조건으로 제1항바호 및 사호에 규정된 어떠한 요건의 준수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개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7 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관계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규정·행정심판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 질의에 즉시 응답하여야 하고 제1항에 규정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각 당사국에게 공개될 경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이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또는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0.8 조

비합치 조치

1.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준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에서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된 중앙 또는 지역정부
- 2) 지방정부²⁾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다.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2.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6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를 위한 어떠한 유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0.3조 및 제10.6조는 정부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적재산권 기관 후원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는, 양 당사국 모두가 당

²⁾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업적 주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제6장(서비스무역) 부속서 6-가 및 6-나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약속에 전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동의한다.

제 10.9 조 유보의 검토

1.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투자에 관한 어떠한 협정을 체결한다면,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전술한 협정상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이 협정에 편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5.2조(공동위원회와 검토)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검토의 일부로서, 양 당사국들은 자국 유보목록을 감소시키고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그리고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기간·제한·조건 및 자격요건을 줄이기 위하여 각각의 유보목록 검토를 수행한다.

3. 그 밖의 경우에 당사국은 합리적인 통지 하에, 자국 유보의 검토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에 따른 편입 또는 검토는 이 협정상 각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약속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 10.10 조 송 금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한 모든 송금이 자유롭고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분

- 나. 이 윤·배 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지불·경영지도비·기술지도료 및 그 밖의 수수료·현물수익 및 투자로부터 파생되는 그 밖의 금액
- 다.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 라. 용자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 마.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 바. 제3절상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 그리고
- 사. 당사국 영역 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 국민의 소득

2. 각 당사국은 송금되는 통화의 현물거래에 관하여 송금일자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한 통화로 지체없이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투자와 관련한 현물수익이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간의 서면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³⁾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가. 과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 나. 유가증권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 다. 형사 범죄
- 라. 통화나 그 밖의 지급수단의 송금에 대한 보고
- 마.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또는
- 바. 연금, 퇴직연금프로그램 및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법정적립기금⁴⁾

제 10.11 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상 그러한 송금을 달리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현물수익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4) 제4항바호에 관하여, 해당 당사국은 미납된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또는 법정적립기금을 충족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투자자에 의한 기금의 송금을 방해 또는 지연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제2항을 조건으로 국경 간 자본거래나 제10.10조에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 가.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간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 가.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 나.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일시적이어야 하며,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어야 한다.
 - 마.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 및 재정적 이해관계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여야 한다.
 - 바.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사.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우호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제1항나호에 따라 채택되고 유지되는 조치는 최소요구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추가하여, 그러한 조치 또는 그 변경사항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에 의하여 채택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제통화기금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0.12 조 수용 및 보상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 나. 비차별을 기초로 할 것
- 다. 적법절차와 제10.4조를 따를 것, 그리고
- 라.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것

2. 보상은

- 가.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충분히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나. 수용 발생(“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 하여야 한다. 그리고
-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은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더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한 시장가격이 자유사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지급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급통화로 환산되어, 지급되는 보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합한 것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가. 수용일의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환산된 수용일의 공정한 시장가격, 이에 더하여
- 나. 그 자유사용가능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5.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과 조항에 따라 수용조치 또는 평가된 보상의 가액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수용을 한 당사국의 법원·행정법원 또는 당사국의 정부기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형성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형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 조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부속서 10-가에 규정된 수용에 대한 양 당사국의 양해에 따라 해석된다.

제 10.13 조 손실 및 보상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혁명·폭동·시민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국이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어느 경우에도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원상회복 또는 보상을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 받아야 하고, 보상에 관하여는 제10.12조에 따라야 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그 상황에서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제 10.14 조 대위변제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을 부여하였고,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한 배상·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이 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당사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는 권리 및 청구에 대한 그러한 인정에 근거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 또는 기관에게 지급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대하여 준용하여야 한다.

제 10.15 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10.3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관련하여,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특별 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0.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으로만 자국 영역 내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하여 투자에 관한 통상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은 투자자나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비밀 영업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법을 공평하고 신의성실하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입수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6 조 보건·안전 및 환경 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보건·안전 또는 환경상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와 같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이 협정과 합치되는 조치를 채

택·유지 또는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국내 보건·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인수·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면제 또는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 또는 이탈할 것을 제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안했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17 조 혜택의 부인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전통보나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그리고
- 나. 기업이 비당사국이나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제 10.18 조 예 외

1.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당사국의 의하여 다음 조치의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공윤리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 이 장의 조항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과 규정의 준수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

- 라. 예술적·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국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마. 그러한 조치가 국내 생산 또는 소비의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일 경우 고갈자원 및 천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 가. 공개될 경우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 나. 당사국이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 1) 무기·탄약 및 전쟁장비의 거래와 그 밖의 상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 2)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시에 취한 조치
 - 3) 핵분열성 및 융합가능성 물질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조치
 - 4) 통신·전력 및 상수도 공급을 위한 중요 공공 기간시설을 무력화하거나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된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⁵⁾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현장상 의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는

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장의 혜택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 또는 그 투자에 부여될 경우 비당사국 또는 그 투자에 대하여 위반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필수적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자국법상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게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투자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

3. 제2항은 이 협정문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부속서 10-나 및 10-다에 각각 규정된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와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에 관한 양 당사국의 양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5) 제2항나호4)목은 그러한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인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한다.

4.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제1항, 제2항나호 및 다호상 취하여진 조치 및 그 조치의 종결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 10.19 조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에 있어서 법원 및 행정법원, 그리고 모든 수준의 관할권 안에 있는 기관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10.20 조 그 밖의 의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 또는 이 장에 더해서 양 당사국간의 기준 또는 추후 형성되는 국제적인 의무가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주는 상황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은 이 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절 분쟁해결

제 10.21 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1. 이 조는 이 장상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국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양 당사국 모두의 투자 또는 투자자 간의 동등한 대우와 중재 판정부에서의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이 조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

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이 장상 당사국의 의무위반 주장에 관하여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의 분쟁에 적용된다.

2. 분쟁의 양 당사국은 먼저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당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비구속적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협의와 협상 요청일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에 회부될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가. 분쟁 당사국과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과 국제투자 분쟁 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분쟁 당사국 및 분쟁 투자자의 당사국 중 하나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해당 분쟁의 양 당사국이 동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른 그 밖의 중재기관

4. 투자자가 분쟁 당사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에 해당 분쟁을 회부하면, 그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3항가호, 나호 및 다호에 따른 중재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가. 분쟁 투자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위반 및 분쟁 투자자 또는 그의 투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내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제기할 것, 그리고

나. 분쟁 투자자는 중재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분쟁을 그러한 중재에 회부한다는 의사와 다음의 사항을 분쟁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제3항가호, 나호 및 다호의 중재판정부 중 하나를 분쟁해결의 중재판정부로 선택, 그리고

2) 이 장에 따른 위반조항을 포함한 분쟁 당사국의 의무 위반 주장 및 투자자 또는 그 투자에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손실 또는 손

해의 간단한 요약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투자자는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류되는 동안 분쟁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한다.

7.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분쟁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을 준수하는 경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가 이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하기로 동의한 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외교적 보호를 제공하거나 국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외교적 보호는 오직 분쟁해결 촉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외교적 의견교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제 4 절 최종조항

제 10.22 조 발효, 기간 및 종료

이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이루어지거나 획득된 투자에 대해서는 제10.3조 및 제10.8조상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조항, 제14장(분쟁해결)의 조항 및 이 장의 적용에 수반되거나 필요한 이 협정상의 그 밖의 조항이 종료일 이후 15년간 더 유효하고, 일반 국제법상 원칙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